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09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문 · 박홍배
이재관 · 임호선 · 김 윤
문금주 · 임미애 · 이원택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조금의”를 “수산물조금의”로,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농어업”을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수산물”을 “수산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농수산자조금의”를 “수산자조금의”로, “농수산물”을 “수산물”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자조금의”를 “수산자조금의”로,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수산자조금”을 “수산자조금”으로, “농수산물”을 “수산물”으로, “농수산업자가”를 “수산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농수산업자가”를 각각 “수산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의무수산자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임의수산자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의무농수산자조금을”을 “의무수산자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임의농수산자조금을”을 “임의수산자조금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수산자조금의”를 “수산자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수산물”으로,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의무수산자조금”으로,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임의수산자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수산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농수

산물의”를 각각 “수산물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업자를”을 “수산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업자별료”를 “수산업자별료”로,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을 “품목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수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를 “수산물의 수산업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수산업자”를 각각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수산물”을 “수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수산업자”를 각각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을 “해양수산부 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수산물”으로, “농수산업자는”을 “수산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를 “해양수산부 장관의”로, “농수산업자에”를 “수산업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는”을 “수산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농수산업자에게”를 “수산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수산업자에게”를 “수산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수산업자에”를 “수산업자에”로,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업자는”을 “수산업자는”으로,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농수산물”을 “수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작”을 “포획·채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을 “수산물의 수산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수산업자로”를 “수산업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농수산업자는”을 “수산업자는”으로, “농수산물의”를 “수산물의”로,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수산업자”를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를 각각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한다.

제29조 중 “농수산업자가”를 “수산업자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농수산업자의”를 “수산업자의”로 한다.

제30조 중 “농수산물외”를 “수산물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농수산업자에게”를 “수산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

-----.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라. -----수산자조금의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3. -----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 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 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

9. -----의무수산물자조금을-----
-----.

10. -----임의수산물자조금을-----
-----.

제3조(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
-----수산물-----의무수산물자조금-----
-----임의수산물자조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

③ -----

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 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 7. (생략)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제4조(자조금의 용도) -----

1. 수산물의-----
2. 수산업자-----
3. 수산물의-----
4. 수산물의-----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산물의 수산업자-----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업자를-----

②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③ -----

-----해양수산부령으로-----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

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생략)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수산

업자별로-----품목의

-----수산물의

-----해양수
산부령으로

-----해양수
산부장관의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② -----수산물의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물의 수산업자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생략)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생략)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

-----.

1. (현행과 같음)
2. -----수산업자의-----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의-----

② -----수산업자-----

---수산업자-----
-----.

수산업자-----
-----수산
업자-----
-----.

③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

쳐야 한다.

1. ~ 3. (생략)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12. (생략)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

-----.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이-----

5.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의원회) ① 수산업자의 -----
-----해양수산부령
으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1. 수산업자-----

이 지명하는 사람

② ~ ⑤ (생략)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
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
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
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
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해양수산부령으로-----
-----.

⑦ -----

-----해양수산부
장관이-----
-----.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
원장의 해임) ① 수산업자-----
-----수산업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

1. 2. (현행과 같음)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수산물의-----
-----수산업자는-----

-----해양-----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
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
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
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
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
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
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
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
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
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수산부장관의

수산
업자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업자는

수산업자의

수산업자에게
.

④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수산업자에게-----

⑤ -----

-----해양수산부령
-----으로-----.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
업자에-----수산물
의-----
-----.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
-----해양수산부장관이-----

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

-----해양수산부령으로-----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산업자-----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업자-----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수산업자는-----

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

-----수산업자의-----

-----.

②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령
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산업자의-----

-----.

⑤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
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
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
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
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
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
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
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
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
조금을 준치할 필요성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산부령으로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자의-----수
산물-----

-----해양수산부령
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⑦ -----

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3. (생략)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

-----.

1. 포획·채취-----
2.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
이-----

② -----수산물의 수산업자는

-----.

-----.

③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

-----해양수산부령으로-----

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생략)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수산물의 수산업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

-----.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4.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수산업자-----
-----.

1. -----
-----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략)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2. 해양수산부장관이-----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양수산부장관

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양수산부령으로-----

-----.

⑤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해양수산부장관-----
-----산부장관-----
-----.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수산업자는-----

-----수산물의-----수산업자-----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 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

② -----

-----수산물의 수
산업자-----

-----수산물의
수산업자-----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

④ -----수산업자의

-----.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

-----수산업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산업자의-----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수산물의

-----.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

1. ~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④ -----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